

『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10월 2일

나. 발 의 자 : 장세구, 김낙관, 안주찬, 이선우, 이지연 의원(5인)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0월 18일

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장 세 구 의원

나. 제안이유

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 및 관련 조례 별도 제정에 따른 중복 조문 및 조항 삭제(안 제1조, 안 제5조~안 제9조)
-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(안 별표 1)
 - 읍·면·동 축종별 제한구역 추가
 - 「농지법」 제28조(농업진흥지역의 지정)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신설

- 읍·면·동 축종별 제한구역 구분에 축종(말) 추가
-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확대
 - 소(한우, 육우) : 250m 이내 → 500m 이내
 - 닭(육계)
 - 20,000마리 미만 : 250m 이내 → 700m 이내
 - 20,000마리 이상 ~ 50,000마리 미만 : 450m 이내 → 700m 이내
 - 50,000마리 이상 : 650m 이내 → 700m 이내
- 「하천법」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 → 1km 이내
 -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조문 삭제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부지경계선
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신설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농지법, 하천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10. 2. ~ 10. 10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정

- 본 「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,
 - 농업진흥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여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